

# 예 산 총 칙

201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73,222,892	11,196,687
일반회계	344,551,775	10,336,553
특별회계	28,671,117	860,134
기타특별회계	28,671,117	860,134
상수도사업	1,471,255	44,138
하수도사업	1,158,085	34,743
수질개선	4,986,708	149,601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90,091	14,703
의료급여기금	624,774	18,743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614,390	18,432
소득특화사업	5,648,947	169,468
농공단지조성사업	883,962	26,519
공영개발사업	1,672,951	50,189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1,119,954	333,59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,928,78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